

유치원 규칙 개정(안)

안전 번호	6
----------	---

제안연월일 : 2024. 4. 11.
제 안 자 : 함현초등학교장
담 당 자 : 김새롬

I. 목적

유치원 규칙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규칙 정비 및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근거하여 유치원규칙 내 학적처리 용어 현행화

II. 주요 내용

가. 제 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1) 유치원장 교외체험학습 구체적인 절차 수립

나. 제 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1) 제 6장을 포괄하는 '학적' 용어 사용

2) 생활기록부에 근거한 학적처리 용어 추가 및 변경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전출, 휴학, 면제, 유예, 복학, 재취학, 자퇴, 퇴학

다. 제 8장 교직원 관리 규정 폐지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

III. 세부 내용

가.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나.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개정안)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2024.3.14.)

현 행	개 정	비 고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 12조 (수업운영방법) ③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교육 및 방과후 운영 시간을 단축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 12조 (수업운영방법)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제출하면 원장은 신청서를 승인하고 가정으로 배부한다. 2. 체험학습 실시 후 일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3.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30일(공휴일 및 방학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상황 및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 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퇴학 및 졸업	제 6 장 학 적	
	제 13조 (입학)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②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③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①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② 본원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전출, 휴학, 복학) ①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전출을 허가한다.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 불가) ③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 종류 다음날로 한다.	
	제 16조 (면제,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② 본원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다.(특수 교육대상유아에 해당, 정원외 학적관리 가능)	
	제 17조 (재취학) 본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유아가(의무교육을 중단한 유아)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유치원에 재취학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	
	제 18조 (자퇴, 퇴학) ①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②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현 행	개 정	비 고
	명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16조 (수료 및 졸업) : 제 26조 (시행규칙)	제 19조 (수료 및 졸업) : 제 29조 (시행규칙)	조 바뀜
제 8 장 교직원 관리 규정	제 8 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 25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① 본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교직원 관리 규정 폐지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신설
제 22조 (근무규정) 교직원의 관리는 공무원 관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칙

1998. 01. 30. 학칙 제정
2006. 11. 30. 학칙 개정
2008. 11. 20. 학칙 개정
2012. 03. 01. 학칙 개정
2012. 12. 11. 학칙 개정
2023. 06. 27. 학칙 개정
2023. 12. 28. 학칙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유치원은 함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 3조 (위치) 본 유치원은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55에 둔다.

제 4조 (적용범위) 본 학칙은 본원 원아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 5조 (교육연한) 본 유치원은 교육연한을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수료한 원아에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 6조 (학기) 본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 ①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제 2학기는 여름방학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이듬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조 (휴업일)

-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 나. 개교기념일(5월 1일)
 - 다. 여름 및 겨울방학
 - 라. 학년말 휴가
 - 마.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
 - 바.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2호와 6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3호, 4호, 5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유치원의 장이 수업일수를 매년 180일 이상으로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③ 유치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로 휴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원아 정원

제 8조 (학급수) 본 유치원의 학급 수는 교육청의 인가에 의한다. 학급편성은 동일 연령의 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원아정원) 본원의 학급당 정원은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 10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 11조 (수업일수)

- ① 본 유치원의 수업 일수는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2조 (수업운영방법)

- ① 본 유치원은 기본교육과정 : 하루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계절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과정: 하루 교육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방과후 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전까지 제출하면 원장은 신청서를 승인하고 가정으로 배부한다.
 2. 체험학습 실시 후 일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유치원으로 제출한다.
 3. 유치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30일(공휴일 및 방학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등 상황 및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④ 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교육 및 방과후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적

제 13조 (입학)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②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③ 본 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입학/편입학/전입학)

- ①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② 본원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유치원의 생활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출, 휴학, 복학)

- ①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전출을 허가한다.
-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 불가)
- ③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 종류 다음날로 한다.

제16조 (면제, 유예)

-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 해당)
- ② 본원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다.(특수교육대상유아 해당, 정원외 학적관리 가능)

제17조 (재취학) 본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유아가 (의무교육을 중단한 유아)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유치원에 재취학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해당)

제18조 (자퇴, 퇴학)

- ①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②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19조 (수료 및 졸업)

- ① 유치원의 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의 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서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정수

제 20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1조 (기타의 비용정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정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 8 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 22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 ① 본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②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3조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23조 제1항 10호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

요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반복적 지각)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3 시설 이용 (하원 후 시설 이용 시 안전문제 등)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
4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 시설 파손)	·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유아와 보호자 상담 ·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등)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제2장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③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 23조 제3항 3호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

요건	보관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3일	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난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물품분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3 소지를 금지한 물품 (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활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보관 - 사용해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 2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조 (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7조 (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10 장 학칙개정 절차

제 28조 (학칙개정 절차) 유치원 규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 29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유치원의 장이 행한 조치는 이 학칙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